

# 定 款

2008.05.27. 제정  
2012.01.12. 개정  
2014.01.24. 개정  
2016.01.05. 개정  
2016.04.25. 개정  
2018.11.29. 개정  
2022.12.22. 개정  
2023.06.28. 개정  
2024.11.11. 개정  
2024.12.30. 개정  
2025.03.19. 개정

# 定 款

2008.05.27. 제정  
2012.01.12. 개정  
2014.01.24. 개정  
2016.01.05. 개정  
2016.04.25. 개정  
2018.11.29. 개정  
2022.12.22. 개정  
2023.06.28. 개정  
2024.11.11. 개정  
2024.12.30. 개정  
2025.03.19.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를 존중하여 입시, 교육, 법조인 배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대학원의 의견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며, 긴밀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삭제 <2018.11.29.>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8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2.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3.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4.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업
5.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

②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과 협의회 간행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1.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법학적성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관련 저작권 활용
2.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교재, 학술도서 출판
3. 신문 및 협의회 간행물 발행에 부수되는 광고수입 및 구독료 등 활용

④ 제3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협의회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한다.

② 설치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의결사항의 준수)** 회원은 협의회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회원이 소속대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는 총회나 이사회는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재의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재의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신상변동 및 탈퇴)** ①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상실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승계한 자가 당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대행하는 자가 회원의 직을 대행하여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④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협의회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등 회원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회원이 소속한 대학(이하 “회원교” 라 한다)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경고(시정조치 촉구 등)
2. 유관기관에 징계사항 및 위반내용 통지
3. 협의회 목적사업 참여 및 수혜 제외

4. 자격정지
5. 당해연도 회비의 50% 이내의 증액
6.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기관에서 회원교에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의 50% 이내의 감액을 지급 기관에 건의
7. 제명
  - ② 제1항의 징계조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인 회원에게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징계조치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총회참석 및 의결권 등 제7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 ⑤ 제명된 회원은 제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없고, 가입신청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제명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총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이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3인 이내
3.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7인 이상 9인 이내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부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가운데 후임 부이사장을 지명한다. 이 경우 후임 부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명한 부이사장도 그 직을 상실한다.
- ④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과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 ③ 이사 및 감사인 회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상실하면,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승계한 자가 당해 회원의 지위와 함께 그 이사, 감사의 직도 승계한다.
- ④ 이사 및 감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결원이 생기면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승계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이사장의 직의 유지 등)** ① 이사장이 임기만료 전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상실한 경우,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장의 직을 상실한 날부터 1년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직을 유지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장이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의 직을 승계한 자는 제15조제3항에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직을 상실한 이사장은 그 직을 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이사장 가운데 연장자, 이사직에 먼저 선임된 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직에 먼저 선임된 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이사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 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협의회 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협의회 의 업무와 재산상황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총회,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 소집 또는 총회를 요구하는 일
6.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 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소집이 요구된 때는 이를 개최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제1항에 의한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에서는 출석회원 중 연장자를 그 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제20조(총회의 개최와 의결)**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원은 서면이나 회원이 재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징계,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② 의장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다만 이 정관 및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제1항에 의한 이사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를 그 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회의 개최와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가 비대면으로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이사회회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② 이사장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 ①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 ③ 삭제 <2024.12.00.>
- ④ 삭제 <2024.12.00.>
- ⑤ 삭제 <2024.12.00.>

**제27조의2(법학적성평가연구원)** ① 법학적성시험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학적성평가연구원을 둔다.

②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법학적성평가연구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연구사업단의 구성)** 삭제 <2022.12.22.>

**제27조의4(연구사업단장 등의 임면과 처우)** 삭제 <2022.12.22.>

**제27조의5(연구사업단의 기능)** 삭제 <2022.12.22.>

**제27조의6(관련 규정)** 삭제 <2022.12.22.>

## 제 6 장 사 무 국

**제28조(사무국의 설치)** 협회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사무국의 직제)**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30조(사무국장등의 임면과 처우)** ① 사무국장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의 공개경쟁 채용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복무, 보수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거나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협회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제31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협의회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협의회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국고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협의회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의2(지정기부금의 공고)** 협의회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말까지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 8 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협의회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인(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0조(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협의회는 해산당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회가 정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소 속	임 기
이사장	호문혁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BIC국제관 A-801	서울대 법과대학	2년
이사	김영철	서울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 법과대학	2년
이사	하경효	서울 송파구 잠실3동 레이크팰리스A 132-2601	고려대 법과대학	2년
이사	백윤기	서울 강남구 도곡2동 타워팰리스 G-4205	아주대 법과대학	2년
이사	박인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67-3	영남대 법과대학	2년
이사	박휴상	광주 북구 용봉동 한화꿈에그린A 101-607	전남대 법과대학	2년
이사	백종인	전주시 완산구 서산 동아3차A 202-902	전북대 법과대학	2년
이사	문종욱	대전 유성구 신성동 두레A 106-104	충남대 법과대학	2년
이사	이철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 51-501	한양대 법과대학	2년
감사	장재욱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A 409-903	중앙대 법과대학	2년
감사	윤용석	부산 금정구 장전3동 416-10	부산대 법과대학	2년

#### 부 칙 <2008.05.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예비 인가 내지 본인가를 받은 대학교의 법과대학의 장 또는 이러한 대학(교)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3조(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협의회 설립 이전에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직한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정관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2.01.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01.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 기본재산 총괄표

( 2008년 5월 27일 설립허가일 기준 )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금	1	100,000,000	
임대보증금	1	200,000,000	
합 계	2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 2008년 5월 27일 설립허가일 기준 )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원)	평가액(원)	비 고
현금	정기예금	0		100,000,000	
보증금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00,000,000	
합 계		0		300,000,000	

[별지: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1. 기본재산 총괄표

( 2012년 1월 12일 현재기준 )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금	1	300,000,000	
합 계	1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 2. 기본재산 세부목록

( 2012년 1월 12일 현재기준 )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원)	평가액(원)	비 고
현금	정기예금	1		300,000,000	
합 계		1		300,000,000	